

#18. 소프트웨어의 숨겨진 IP: 저작권

안녕하세요. 길세영 변리사입니다.

지난 연구자료에 이어서, 저작권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IP 분쟁 이슈를 살펴보고,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소프트웨어는 저작물

소프트웨어가 특허에 대응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, 특허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기술적 아이디어일 뿐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아닙니다. 소스 코드(source code)나 실행 파일로 특정되는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서 저작물이며,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. 작가가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,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창작(저작) 행위에 해당합니다.

소스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그 소스 코드가 작성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.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, 우리나라를 포함한 베른협약 체결국(약 177 개국; 주요 국가를 모두 포함함)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등록하면, 해당 저작물이 그 등록일에 공표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,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을 발생시키고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해지는 등 유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저작권이 등록되면 더 쉽고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
컴퓨터 프로그램 침해 판단 기준



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복제, 수정,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 소스 코드의 모든 부분인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. 소스 코드 중 **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**에 대하여 **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**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.

예를 들면, HTML 태그 등 일반적인 표현 이외에 독창적으로 표현된 부분만 침해 판단 대상이 됩니다. 또한, 대법원은 정량적 유사도를 근거로 삼아 소스 코드 간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(대법원 2012.01.27. 선고 2011 도 626 판결).

한편, **어떤 소스 코드(원저작물)에 창작성 있는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소스 코드(2 차적 저작물)를 무단으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행위**도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(2 차적저작물작성권) 침해에 해당합니다.

오픈 소스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스가 아닙니다.



오픈 소스(open source)라고 해서 마음대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**오픈 소스 라이선스**에서 정하는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.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Apache License, Apple Public Source License, GNU General Public License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(배포 시 소스 코드 제공 의무, 수정 내용 고지,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등)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.

오픈 소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**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와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.**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구현한 소프트웨어라도 그것이 타인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오픈 API 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웹/앱 운영 주체(Google, Naver 등)가 정해 놓은 약관에 따라야 하고, 웹/앱 운영 주체의 데이터베이스나 상표까지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맺음말

소프트웨어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, 법제도가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그리고,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기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,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침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

법규정, 라이선스, 약관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, 언제든지 분쟁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, 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비 전략을 미리 세우시길 바랍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특허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2024 SEUM IP

길세영 변리사

Patent Attorney / Partner

sygil@seumip.com